

case

4

TFT-LCD 모듈

요약

사례명	TFT-LCD 모듈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0557 (2021.08.04.)
사실관계	일본에서 TFT-LCD 셀 시트를 제작하여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에서 셀 시트를 개별 셀로 절단하고 부품들에 부착하는 등 최종 조립하여 TFT-LCD 모듈 생산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TFT-LCD 셀은 절단 시점과 관계없이 완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구성 요소이며, 이를 생산하기 위해 일본에서 수행된 복잡한 제조 공정은 해당 셀이 디스플레이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최종 용도를 미리 결정함반면, 중국에서의 공정은 해당 셀을 최종 제품과 명칭, 성질, 용도 면에서 구별되는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일본임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³⁾

사례명 [TFT-LCD 모듈]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0557 (2021.08.04.)

사실관계

요청자 JDI Display America, Inc. (대리인: Toshiba Logistics America, Inc.)

제품명	• TFT-LCD 모듈
제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FT-LCD 셀 • 편광판 • 백라이트 • 구동 및 제어용 인쇄회로기판 • 연결용 플렉시블 PCBA
용도	• 다양한 소비자용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

제조공정



01

일본에서 제조된 TFT-LCD
셀 시트 중국으로 수출



02

중국에서 셀 절단 및
최종 제품 조립



03

미국 수출

상세공정

1. 일본에서 TFT-LCD 셀 시트 제조
 - 화학기상증착법(CVD)을 통해 기판 위에 트랜지스터 형성
 - 컬러 매트릭스를 유리 기판 위에 제작하여 컬러 필터 제조
 - 컬러 필터와 TFT 사이에 액정 층을 주입한 후 접합하여 TFT-LCD 셀 시트 제조
2. 중국으로 TFT-LCD 셀 시트 수출
3. 중국 제조 공정
 - 셀 시트를 개별 셀로 절단
 - 절단된 셀을 제어 회로가 포함된 PCBA에 부착
 - 편광판, 백라이트, 연결용 플렉시블 PCBA 부착
4. 완성된 최종 제품 포장 후 미국 수출

3)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1940)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 수입 후 가공이 단순한 조립에 그치는 경우, 물리적 변형(physical change)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성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226, 542 F. Supp. 1026, 1031,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제품의 최종 용도가 수입 시점에서 이미 사전 결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또한 조립과 관련하여 단순 조립인지 또는 보다 복잡한 조립인지 여부를 평가하며, 개별 부품들이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는지를 검토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결 수입된 구성 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판정 결과

- ▣ TFT-LCD 셀은 절단 시점과 관계없이 완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구성 요소이며, 이를 생산하기 위해 일본에서 수행된 복잡한 제조 공정은 해당 셀이 디스플레이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최종 용도를 미리 결정함
- ▣ 반면, 중국에서의 공정은 해당 셀을 최종 제품과 명칭, 성질, 용도 면에서 구별되는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일본임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상 최종 제품인 TFT-LCD 모듈의 원산지는 일본임

II 시사점

- 제품에 핵심 기능을 부여하는 단일 구성 요소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 요소를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가 될 수 있으며, 단순 조립이나 절단 등의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0557 (2021.08.04.), <https://rulings.cbp.gov/ruling/N320557>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